

시 민

주무관	노동정책팀장	노동정책담당관	노동공정상생정책관	행정 1부시장	서울특별시시장
정유진	장선경	조완석	박재용	김의승	09/15 오세훈
협 조					

문서번호	노동정책담당관-11119
결재일자	2023. 9. 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서울특별시시장 제117호

동행·매력  
특별시서울

SEOUL M! SOUL

##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

2023. 9. 13.(수)

**노동 · 공정 · 상생정책관**

(노동정책담당관)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 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, 빅데이터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, 젠더자문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생산·제시·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- (성평등) 성별고정관념·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기 타 사 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 을 사용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공개 여부를 " <b>비공개</b> "로 설정했다면 <b>법적근거</b>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

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
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

## □ 생활임금 결정 개요

- 결정근거: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
- 결정절차: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·의결 후  
서울특별시장이 결정 및 고시
- 심의일시: '23. 9. 13.(수)

## □ 심의결과

- '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: 시급 11,436원
- 생활임금 적용기간: '24.1.1. ~ '24.12.31. (1년)
- 생활임금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은 2023년과 동일
  - 적용기준: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
  - 적용대상
    -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
      - ※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
    - ② 서울특별시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
    - ③ 서울특별시 위탁 사무의 수행(시비100%)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
      - ※ 수익창출형,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

- ❖ '23년 생활임금(11,157원) 대비 2.5%(279원) 인상
- ❖ '24년 최저임금은 9,860원

## ○ 심의의견

- 공공-민간부문의 형평성, 시 재정 여건,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및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·의결

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금액**

○ 시급 11,436원

- 월급 환산 2,390,124원(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, 월 209시간 기준)

**향후계획**

○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: '23. 9. 18.

※ 최저임금 고시일('23.8.4.)로부터 45일 이내 결정('23. 9. 18.限)

붙임: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(안). 끝.